의안번호	제 781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발 의 자	박 형 용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(박형용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81

발의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발 의 자 : 박형용, 이숙애, 이상욱
이의영, 장선배, 허창원
황규철

1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(안 제3조)

나.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, 위원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다. 청소년 정책 · 사업 추진 시 위원회 의견 수렴 · 반영 및 위원회 의견 ·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처리결과 회신 의무 규정 (안 제8조)

라.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 및 교류활동 참여 기회 부여 (안 제10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79호

다. 협 의 : 여성가족정책관

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충청북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·건의
2. 다른 시·도 및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 시·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
3.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, 토론회 개최 등 여론수렴 활동
4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

제4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④ 도지사는 위원 위촉 시 성별 · 연령 ·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.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⑦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 · 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,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, 관련 기관 · 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 ·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 수렴)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.

제9조(경비) 도지사는 정기회의 등 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표창 등)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문화탐방·국제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1조(위탁)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다른 조례의 적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사가 구성·위탁 운영 중인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·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관 계 법 령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“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

제2조의2(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참여위원회“라 한다)의 위원은 성별 · 연령 ·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 ·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기 구성 운영중으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의제 발굴, 토론, 제안 등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

○ 충청북도 청소년관련 정책, 사업, 예산 등에 대한 의견수렴, 토론 등 참여활동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9조(경비)

4. 비용 추계결과

○ 추계의 전제

- 2021년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 적용

(단위:천원)

구 분	합 계	산출기초	비고
위원회수당	6,000	-(출석수당) 15명×100천원×4회	※ 위촉직(30명)중 50%산정

○ 추계결과 :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27,000천원

○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3,000	6,000	6,000	6,000	6,000	27,000
도 비	3,000	6,000	6,000	6,000	6,000	27,000
세 출	3,000	6,000	6,000	6,000	6,000	27,000
위원회수당	3,000	6,000	6,000	6,000	6,000	27,000